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23-15호  
2023. 3. 1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23-26호) …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27호) …………… 5

### 공 고(3)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311호) ……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공고 제2023-312호) …………… 7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23-313호) …………… 11

###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02호) ·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07호) · 25

공 람										
--------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26호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로부터 대덕구 읍내동 52-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가변차로 (확보)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덕구청(도시계획과 ☎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시설(변경)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690	18.5	보통차 도로	74	대로1-2 (읍내동 75-6)	중로3-308 (읍내동 517-2)	일반 도로	-	대전시 고시 2021-120호 (21.5.17.)	
변경	중로	2	690	18.5~24.0 (4.0~5.5)	보통차 도로	74 (71.3)	대로1-2 (읍내동 75-6)	중로3-308 (읍내동 517-2)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신설	중로	3	308	13.0	전차 도로	149	중로2-690 (읍내동 517-2)	소로1-읍내5 (읍내동52-4)	일반 도로	-	대전시 고시 2021-120호 (21.5.17.)	
변경	중로	3	308	13.5~18.5 (0.5~3.5)	전차 도로	149 (144)	중로2-690 (읍내동 517-2)	소로1-읍내5 (읍내동52-4)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 )는 금회 시행하는 부분임

나.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690	중로2-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li> <li>- 연장 : 74m(71.3m)</li> <li>- 폭원 : 18.5~24.0m(4.0~5.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속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변경</li> </ul>
중로3-308	중로3-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li> <li>- 연장 : 149m(144m)</li> <li>- 폭원 : 13.5~18.5m(0.5~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속완화차로 설치 및 보도 확폭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li> </ul>

( )는 금회 시행하는 부분임

##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2-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중로2-690호선, 중로3-308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1개 노선) 가변차로 (확보)개설공사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내용 : 공동주택 신축사업 가변차로 (확보)개설공사
- 규모
  - 중로2-690호선 : B=4.0~5.5m, L=71.3m
  - 중로3-308호선 : B=0.5~3.0m, L=144.0m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대표 서남중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편입토지조서 세목조서 붙임”

사. 관계도서

-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중로2-690호선

연번	소제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계			10필지		494.0	491.0					
1	대덕	읍내	517-30	구	77.0	77.0	농림축산식품부				
2	대덕	읍내	517-95	구	31.0	31.0	농림축산식품부				
3	대덕	읍내	517-35	구	1.0	1.0	농림축산식품부				
4	대덕	읍내	517-2	대	41.0	41.0	기획재정부				
5	대덕	읍내	517-3	대	100.0	100.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6	대덕	읍내	528	도	40.0	40.0	국토교통부				
7	대덕	읍내	75-7	대	32.0	32.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8	대덕	읍내	75-6	대	73.0	72.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9	대덕	읍내	75-8	대	96.0	96.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10	대덕	읍내	74-1	대	3.0	1.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 중로3-308호선

연번	소제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계			10필지		61.0	61.0					
1	대덕	읍내	52-4	대	10.0	10.0	국토교통부				
2	대덕	읍내	51-2	철	15.0	15.0	국토교통부				
3	대덕	읍내	51-17	대	5.0	5.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4	대덕	읍내	51-1	대	6.0	6.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5	대덕	읍내	51-22	대	4.0	4.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6	대덕	읍내	51-4	대	1.0	1.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7	대덕	읍내	51-21	대	7.0	7.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8	대덕	읍내	521-10	철	2.0	2.0	국토교통부				
9	대덕	읍내	45-6	임	7.0	7.0	주식회사 플라리스디앤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34, 102-1205(도룡동)			
10	대덕	읍내	45	전	4.0	4.0	주식회사 플라리스디앤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34, 102-1205(도룡동)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2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석봉동 205-9	대덕대로1605번길 36	2023. 3. 17.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6,0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17-27	덕암로 256	2023. 3. 17.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 반영
상서동 277-5	신탄진로567번길 13	2023. 3. 17.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89-1	신일서로125번길 2	2023. 3. 17.	건물신축	신일서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3. 17. ~ 2023. 3. 31.(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나. 대상업소: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06 (송촌동) / 번지농장돌판아구찜 (한○수)
  - 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번지농장돌판아구찜(사업자등록 폐업일 2016. 1. 25.)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3. 예고대상
  - 위 치 : 대덕구 우암로 486번길 일원
  - 주차면수: 16면
  - 조성시기: 2023. 4월 중
  - 관리주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3. 3. 17.(금) ~ 2023. 4. 7.(금)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vlfwpdi@korea.kr)
-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 마. 제출기일: 2023. 3. 17.(금) ~ 2023. 4. 7.(금)
-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b>붙임1</b>	<b>의견제출서</b>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b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서</b>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right;"> <p>년 월 일</p> <p>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귀하</p> </div> </div>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313호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 략
  - 기 간 : 2023년 3월 17일 ~ 4월 10일
  - 장 소 : 대덕구 세정과 및 국토교통부 공사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17일 ~ 4월 1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대덕구 세정과 및 인터넷(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 제출방법 : 대덕구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끝.

##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674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3. 1. 1.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2인이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의견가격
	의견제출 사유	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b>처리절차</b>		
의견서 작성 의견제출인	접수	한국부동산원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결재
		처리 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관련근거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항)
3. 주요내용
  - 가.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운영대수

운영 예정 장소	운영대수(대)	비고
계	18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	6	민원정보과 5 토지정책과 1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	12	각 1대

- ※ 운영 관리 :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근거리
  - 촬영시간 :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 4. 의견제출

-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나. 제출기한 : 2023. 4. 6.(목)까지
-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2023. 4. 6, 18:00까지 도착하여야함)
  - 주소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 팩스 : 042)608-3825
- 라. 제출양식 : [붙임] 참조
- 마.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정보과 (☎042-608-6702)
  -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 포함) (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써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음성의 녹음
-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 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구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동장

2.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팀장, 행정팀장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

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3-30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9.25.시행) 및 「국가재정법」(2023.1.1.시행)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나. 본문 내 “탄소감축”을 “온실가스감축”으로 하고, “탄소인지예산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탄소인지예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하며, “탄소인지결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및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너지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산업과(전화 : 042-608-6912, FAX : 042-608-3837,  
E-mail : song8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전화: 042-608-6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호 및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탄소 감축”을 각각 “온실가스감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탄소인지예산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호 중 “탄소인지예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탄소인지결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탄소감축 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탄소”를 “온실가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p>	<p>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탄소감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온실가스감축-----.</p>
<p>제2조(정의)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p>	<p>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p>
<p>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p>	<p>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온실가스감축-----</p>
<p>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p>	<p>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 온실가스감축-----</p>
<p>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p>	<p>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p>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탄소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 및 탄소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온실가스감축 -----  
-----  
-----,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제4조(지침서) ① ----- 온실가스감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  
-----.

② ----- 온실가스감축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③ -----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략)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생략)

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추영향평가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  
-----.

제6조(위원회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제7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 -----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  
-----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
6.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p>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2. 대덕구의 <u>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u>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p> <p>3. 대덕구의 <u>탄소</u>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p> <p>4. <u>탄소인지예산제</u>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5. <u>탄소</u>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제13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u>탄소인지예산제</u>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p> <p>제15조(교육 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u>탄소감축</u>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16조(구민 참여 및 지원)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u>탄소인지예산제</u>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u>탄소인지예산제</u></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u>-----</p> <p>3. ----- <u>온실가스</u> -----</p> <p>-----</p> <p>4.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u>-----</p> <p>-----</p> <p>5. <u>온실가스</u> -----</p> <p>-----</p> <p>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u> -----.</p> <p>제15조(교육 과정 운영) -----</p> <p>-----</p> <p><u>온실가스감축</u> -----.</p> <p>제16조(구민 참여 및 지원) ① -----</p> <p>-----</p> <p>-----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u> -----</p> <p>-----</p> <p>-----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u> -----</p>
-----------------------------------------------------------------------------------------------------------------------------------------------------------------------------------------------------------------------------------------------------------------------------------------------------------------------------------------------------------------------------------------------------------------------------------------------------------------------------------------------------------------------------------------------------------------	--------------------------------------------------------------------------------------------------------------------------------------------------------------------------------------------------------------------------------------------------------------------------------------------------------------------------------------------------------------------------------------------------------------------------------------------------------------------------------------------------------------------------------------------------------------

<p>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u>탄소인지예산제</u>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u>산제</u> -----</p> <p>-----.</p> <p>② -----</p> <p>-----</p> <p>-----</p> <p>-----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u> -----</p> <p>-----.</p>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